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6·10민주항쟁일(6월 10일) 공휴일 지정〉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2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상욱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10.
3. 회부연월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경일 및 공휴일은 없는 실정임.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은 군사 독재 정권을 시민혁명으로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진 기념비적 항쟁임.

이에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6·10민주항쟁일인 6월 10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로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¹⁾ 6·10민주항쟁일(6월 10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u>광복절</u> , 개천절 및 한글날 2. ~ 10. (생략)	제2조(공휴일) ----- --. 1. ----- ----- <u>6·10민주항쟁</u> , <u>광복절</u> ----- ----- 2. ~ 10. (현행과 같음)

1) 6·10민주항쟁일(6월 10일)을 국경일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19호, 김상욱의원 대표발의, 2025.1.10. 발의)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음.

2. 검토의견

6·10민주항쟁일(6월 10일)은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정부 주관 기념일로 규정되어 있으나,²⁾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³⁾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⁴⁾에 따른 공휴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개정안은 6·10민주항쟁일(6월 10일)을 국경일로 규정하는 「국경일에

2)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별표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33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6·10민주항쟁일(6월 10일)을 국경일에 해당하는 기념일로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정 공휴일을 신설하는 것은 공휴일 제도의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고유한 입법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⁵⁾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6·10민주항쟁일(6월 10일)의 국경일 여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되, 공휴일 지정 내지 확대에 따른 입법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6·10민주항쟁일(6월 10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는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국경일 내지 기념일로 6·10민주항쟁일의 의미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공휴일 확대로 국민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소비 진작을 유도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같은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반면, 법정 공휴일이 신설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6)에 따른

5) 참고로, 제헌절(7월 17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6)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유급 휴일이 되는 바,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가 주요 국가 대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관공서가 휴무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점검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

<주요 국가 공휴일 수>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공휴일 수	15일	16일	11일	12일	8일	10일	11일

자료: 인사혁신처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6·10민주항쟁일(6월 10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 내지 부정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인사혁신처는 6·10민주항쟁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국민적 차원에서 기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공휴일 확대는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안으로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고, 주요 선진국 대비 적지 않은 공휴일 수(15일)와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해 온 상황('21년 4일, '23년 2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6·10민주항쟁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기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우리나라 전체 공휴일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점,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공휴일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바,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